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감정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준식
건명	송명원 소유물건 (2024타경10440)
감정평가서번호	DE242-1111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 전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대구·경북지사

42453 대구광역시 남구 큰골8길 14, 1층(대명동)

TEL : 053-742-0706 | FAX : 053-742-0764 | www.idab.co.kr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이은영

이은영 (인)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대구경북지사

지사장 조재익 (인)

감정평가액	이억팔백만원정 (₩208,000,000.-)		
-------	--------------------------	--	--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준식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대구지방법원 경매1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송명원 (2024타경10440)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11.19	2024.11.18 ~ 2024.11.19	2024. 11. 21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원/㎡)	금액(원)
	구분건물	1개	구분건물	1개	-	208,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208,000,000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채거혜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범어네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집합건물 (브라운스톤 범어 10층 오-1006호)로서, 대구지방법원 경매1계의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 임.

II. 감정평가의 근거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제반 감정평가이론 및 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III. 기준가치,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실시기간

1. 기준가치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11.19.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 2024.11.18. 및 2024.11.19.자로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 물건에 대한 개별적인 상황을 조사·확인하였음.

IV.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감정평가액의 산출의견

-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의 도출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함.
 -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의 가치를 일체로 하여 유사사례를 대상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보정·비교하여 구분소유권의 가액을 구하는 "거래사례비교법"
 - 1동 전체의 가액을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등으로, 건물은 원가법으로 구한 후 대상구분 소유권에 배분하는 "원가법"
 - 수익성부동산의 구분소유권 감정평가지 대상의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파악하고 이를 적정한 이율로 환원 또는 할인하여 대상부동산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수익환원법"
- 본건 집합건물(오피스텔)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6조에 의거 인근 유사 오피스텔의 일반적인 거래시세와 입지조건, 부근상황 및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상태, 설비상태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성 등의 제반 가치형성 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였으며, 귀 요청에 의거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배분하였음.
- 대상물건의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별로 정한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다른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과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곤란하여 합리성 검토를 생략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 감정평가조건

해당사항 없음.

VI. 그밖의 사항

1. 본건 집합건물(오피스텔)은 귀 제시목록상 구조, 전유면적 및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물적 동일성이 인정됨.
2.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현황 및 건물구조변경 등의 유무는 확인이 불가하여 건축물 현황도 및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동유형 오피스텔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상 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3. 본건은 평가명령서상 1동의 건물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하였음.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175-1 브라운 스톤 범어	공동주택 (아파트), 업무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근린생활 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37층 지하6층 지하5층 지하4층 지하3층 지하2층 지하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각 11층 12층, 13층 각 14층	2,032.2514 1,657.455 3,681.7346 3,879.6726 3,790.0271 3,098.6551 2,755.5061 2,995.1402 3,112.7763 3,040.2433 2,733.3546 3,391.4372 3,031.7990 1,498.6679 1,485.6018 1,496.9129 1,485.6018 1,496.9129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대	15층, 16층 각	1,485.6018			
				17층	1,496.9129			
				18층, 19층 각	1,485.6018			
				20층	596.5656			
				21층	1,496.9129			
				22층, 23층 각	1,485.6018			
				24층	1,496.9129			
				25층, 26층 각	1,485.6018			
				27층	1,496.9129			
				28층, 29층 각	1,485.6018			
				30층	1,496.9129			
				31층, 32층 각	1,485.6018			
				33층	1,496.9129			
				34층	1,485.6018			
				35층	779.9528			
				36층	684.9116			
	중심상업지역	4,991						
	(내)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가				철근콘크리트구조 10층 오-1006호	54.0587	54.0587	208,000,000	비준가액
				1. 소유권/대지권	8.7417 4,991x----- 4,991	8.7417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62,400,000 145,600,000	
	합 계			이 하	여	백	₩208,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대상물건 개요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건물명	브라운스톤 범어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6층, 지상37층			규모	총1동 180세대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일	2017.06.30
기호	층/호수	대지권(m ²)	전유면적(m ²)	공용면적(m ²)	비고
가	10층/오-1006호	8.7417	54.0587	30.1728	-

※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에 대한 상세내역은 감정평가요항표 참조

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산출개요

본건 집합건물(오피스텔)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에 의거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가. 비교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층/호수	전유면적 (㎡)	거래금액 (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비고
1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제11층 제오-1110호	54.4323	215,000,000	3,949,000	2024.06.02 2017.06.30	-
2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제14층 제오-1404호	54.9390	215,000,000	3,913,000	2024.07.05 2017.06.30	-
3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제21층 제오-2105호	55.8151	235,000,000	4,210,000	2024.07.05 2017.06.30	-

나. 선정사유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중 대상물건과 비교가능성이 인정되는 거래사례인 사례기호(1)을 비교 거래사례로 선정함.

3.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선정된 비교 거래사례에 거래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로 정상화 하는 작업으로서, 선정된 비교 거래사례는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의 개입 등을 발견할 수 없음.(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시점수정

가.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출처 : 한국부동산원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2023.12=100)]

사례 기호	구분	매매가격지수	산출내역	상승률 (%)
거래 사례 #1	2024년 05월	98.48	$(96.18 - 98.48) / 98.48 \times 100$	-2.335% (0.97665)
	2024년 10월	96.18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의 변동과 시장동향을 조사·분석한 지수로서,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상 대구광역시 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함.

나. 시점수정치의 결정

본건은 오피스텔로서 인근지역 내 오피스텔의 가격변동추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매매가격지수(오피스텔)를 기준으로 비교 거래사례의 거래시점으로부터 기준시점 현재까지의 시점수정치를 산정하였음.

5. 지역요인 비교(가치형성요인)

비교 거래사례는 본건과 동일 단지 내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개별요인 비교(가치형성요인)

- 개별요인 비교항목

조건	항 목
단지외부 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단지내부 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호별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개별요인 비교치

일련 번호	비교 사례	단지외부 요인	단지내부 요인	호별 요인	기타 요인	계
가	거래사례#1	1.00	1.00	1.00	1.00	1.000
	본건은 거래사례(1) 대비 전반적인 개별요인 대등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기타 참고자료

가. 본건 및 인근 가격수준

지리적위치 (건물명)	구분	전유면적 기준 가격수준 (원/㎡)	비고
브라운스톤 범어	유사 단위세대	3,800,000 ~ 3,900,000	-

8. 전유면적당 단가의 결정

일련 번호	거래사례 단가(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전유면적당 적용단가(원/㎡)
가	(1)3,949,000	1.00	0.97665	1.00	1.000	3,850,000

III. 감정평가액의 결정

평가대상 물건과 유사한 인근지역 내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동종·유사 물건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어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일련 번호	층/호수	전유면적 (㎡)	전유면적당 단가(원/㎡)	감정평가액 (원)
가	10층/오-1006호	54.0587	3,850,000	208,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범어네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공공기관, 업무시설, 아파트, 오피스텔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2호선 "범어역"이 위치하는 등 교통상황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가)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6층 지상37층건 중
10층 오-1006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06.30)

외 벽 : 복합판넬, 대리석붙임,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 벽 : 벽지, 타일 등 마감,
바 닥 : 강화마루,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일련번호(가) :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대체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서측으로 폭 약 70미터, 남측으로 폭 약 12미터, 북동측으로 폭 약 8미터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광로1류(폭 70m 이상)(접함),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함), 소로1류(폭 10m~12m)(접함),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 확인임.

(9) 공부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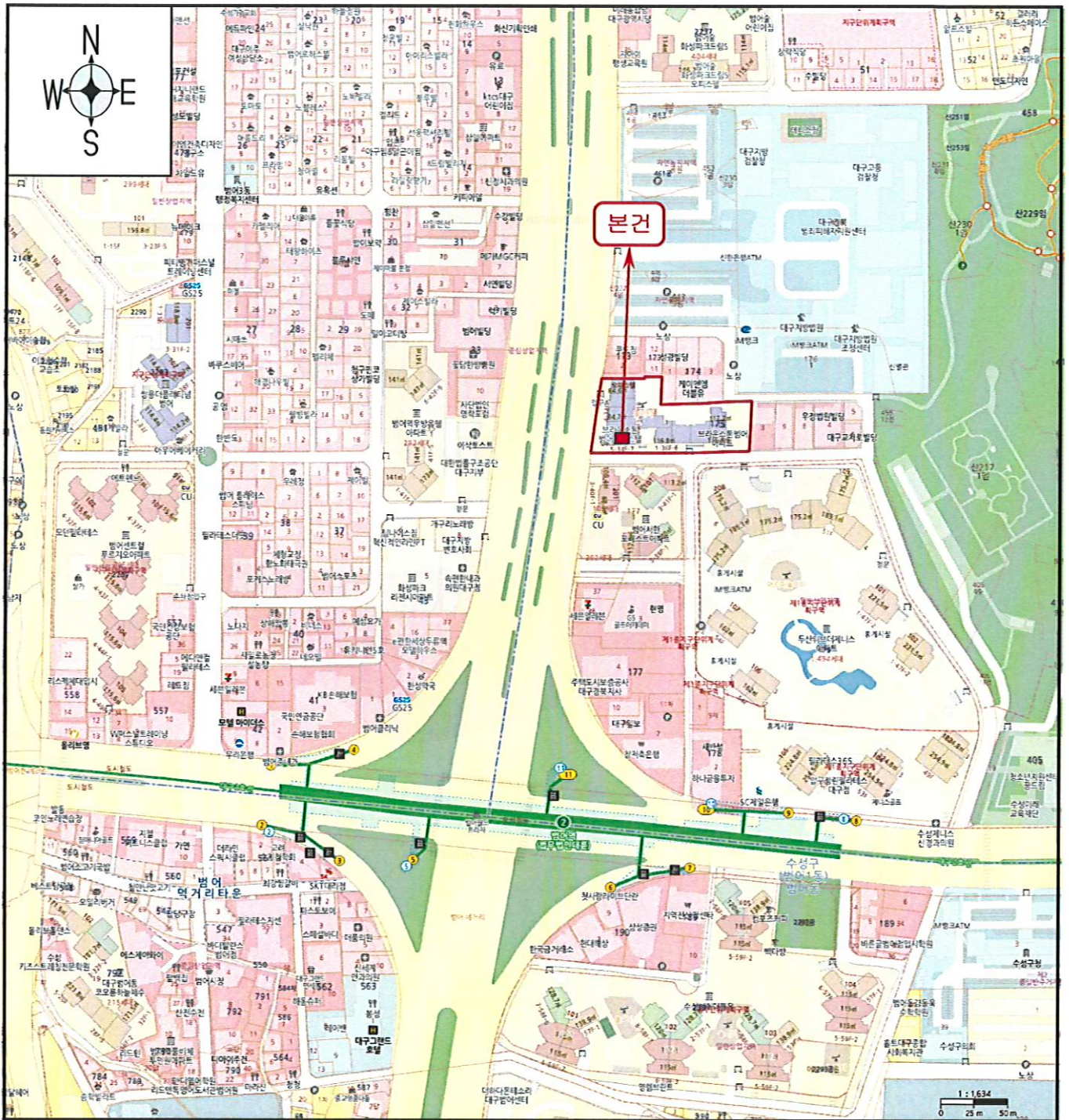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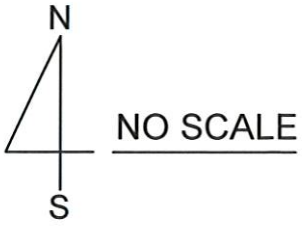
- 1)임대관계 : 미상임.
- 2)기 타 :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현황 및 건물구조변경 등의 유무는 확인이 불가하여 건축물 현황도 및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동유형 오피스텔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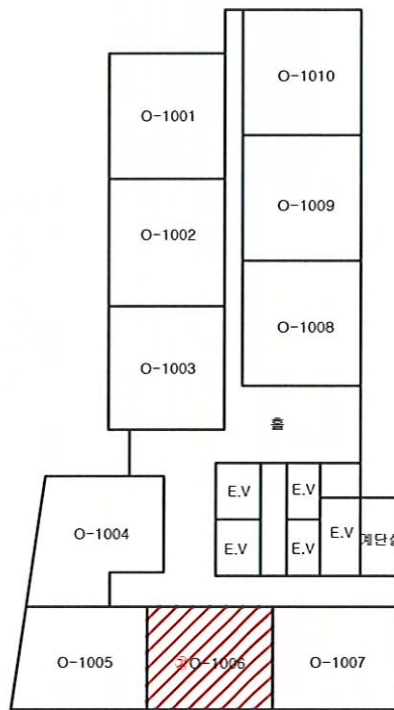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10층 오-1006호



임대 및 건물이용개황도



호별배치도



본건 :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10층 오-100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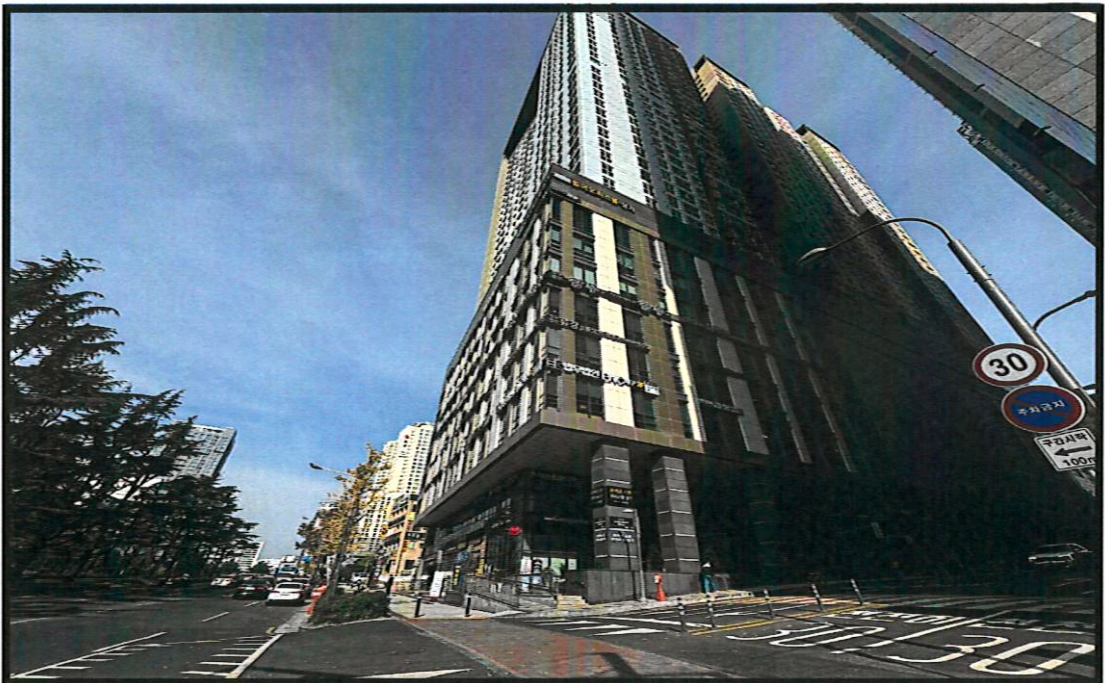
임대상황표

범례	임차인	임대내역		조사처	비고
		보증금	월세		
		임대내역 미상임			
		-- 이하여백 --			

사 진 용 지



<본건 단지 북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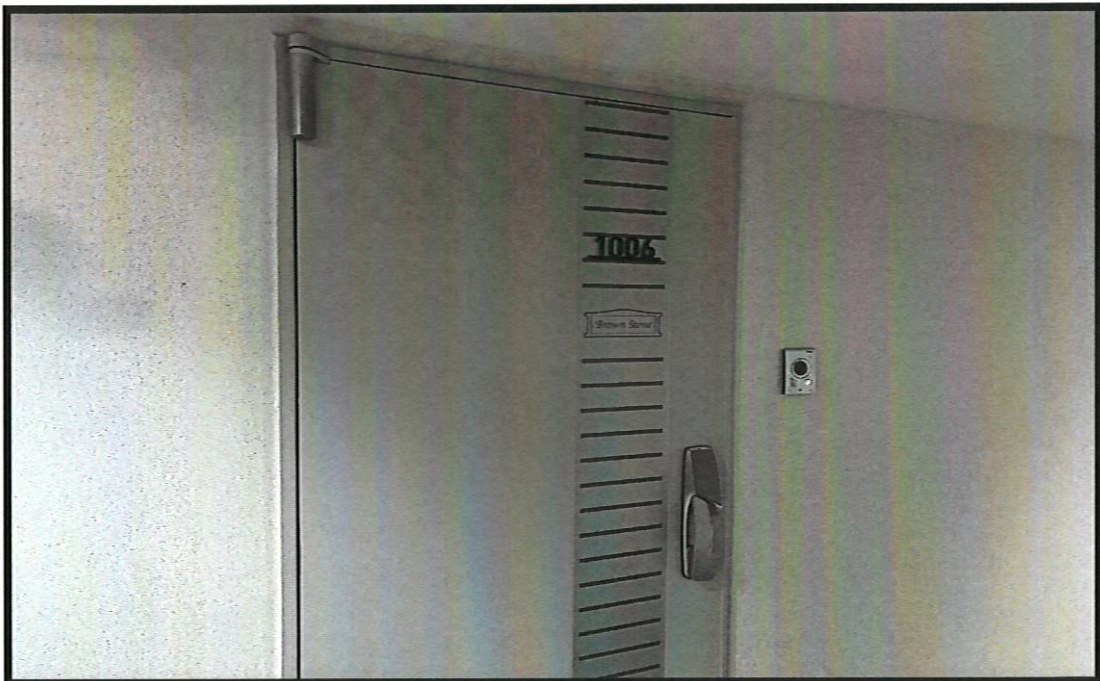


<본건 단지 남서측 전경>

사 진 용 지



<본건 단지 남동측 전경>



<본건>

청 구 서

(전화: 053-742-0706, FAX: 053-742-0764)

문서번호 : DE242-111101

수 신 :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준식 귀하

제 목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수료 납입통지

1. 2024.11.11 자 귀 제 「 2024타경10440 」 호로 의뢰하신 「 송명원 소유물건(2024타경10440) 」 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평가하여 회보합니다.

2. 위 건에 대하여 감정평가 보수 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가수수료를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내 역

과 목	금 액	비 고
평 가 수 수 료	299,040	
실	여 비	212,000
	토지조사비	-
	물건조사비	10,000
	공부발급비	2,700
	기타 실비	4,000
비 소 계	228,700	(200,000+158,000,000 x 11/10,000)x 0.8배 ≈ 299,040
특 별 용 역 비	-	
공 급 가 액	527,000	1,000원 미만 절사
부 가 세	52,700	
합 계	579,700	
기납부 착수금	-	
정 산 청 구 액	579,700	

붙 임 : 감정평가서 2 부

신한은행 100-014-221521

사업자등록번호: 502-85-17488

예금주 :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대구경북지사장 조재익

